

<p>(參 照)</p> <p>1. 경 과</p> <p>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 ○ 제안일자 : 1995.9.15 <p>나. 회부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94.9.16 <p>다. 상정일자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'89.12.6 우리 시 조례 제2385호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8개 사업지구중 4개 지구 사업이 기 완료되었고, 14개 지구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있어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, ○ 향후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자원의 고갈로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규모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추진중에 있으나, 지구지정 절차 등으로 상당기간 이후(1~2년 추정)에나 착수 가능하므로, ○ '96년 예산부터는 본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,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도시기반시설사업 투자재원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본 회계를 폐지하고자 함.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재경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보면,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제안 이유로서, 첫째-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회계 운영을 대상으로 한 사업지구 일부는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 단계에 있어 특별회계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고, 둘째-앞으로는 토지자원의 고갈로 대단위 택지개발가능성이 적을 뿐만아니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도 1~2년 후이나 착수가 가능한 실정므로,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 '96년부 	<p>터는 일반회계에 그 제정을 두어 운영하겠다고 본 조례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런데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에 쫓아,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면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 목적이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, 도시계획법,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조성, 도시기반 설치 및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였는데, ○ 시장이 주장한 폐지조례 이유는 이 회계 운영을 대상으로 한 택지사업지구가 완료단계에 있거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도 1~2년 후이나 가능하는 등 다만, 택지개발 대상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어, ○ 이 조례 설치목적이 택지조성사업 외에도 도시기반 설치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, 설혹 택지조성사업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설치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, 또 서울시가 '94.9 발표한 바 있는 5대 거점 지역개발계획을 보면, ○ 마곡지구와 난지도지구등 대형택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고, 또 '95.10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에는 자투리지역등 소규모 개발사업 대상지도 99만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의 제안 이유만으로는 폐지사유가 적당치 않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재검토가 요구됨. ○ 또, 본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칙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부칙 ②항(다른 조례의 개정)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“제26조 제1항제1호중”은 조문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“제26조제1항제4호중”으로 문항 숫자 수정이 요구됨.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金錫浩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金芳任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